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. 9. 4 선고 2018가단135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432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의 (가) 부분 약 117m² 지상 비닐하우스(덮개지붕) 1동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,200,000원 및 2018. 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임성철

별지